

제3103호  
2024. 6. 26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 
편집인 : 홍보담당관 유진영  
전화 : 3396-4955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자치법규

선	기관 의 장
람	

# 구 보

- 자치법규  
[입법예고]  
제2024-650호 :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..... 2
- 고 시  
제2024-42호 :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..... 7
- 공 고  
제2024-651호 :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..... 8  
제2024-657호 : 공시송달공고 ..... 9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입법예고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650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6월 21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중구 고시 제2024-23호 중구 빈집정비계획 고시(2024.03.20.)됨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빈집 정비 목적 및 개념정의(안 제1조~2조)
  - 빈집 정비 및 지원 목적 명시
  - 소규모주택법 상의 빈집 및 정비사업 개념 명시
- 빈집 정비 및 지원을 위한 책무(안 제3조)
  - 구청장의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의무 규정
- 빈집 정비계획 수립 절차(안 제5조~제6조)
  - 빈집 정비계획 수립 기준 및 절차 명시
  - 빈집 실태조사 의무 규정
- 빈집정비사업의 방법(안 제7조~10조)
  - 빈집 정비사업 범위 및 규정 명시
  - 빈집 정비 지원 범위 및 기준 명시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주택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주택과, 문의전화 : 02-3396-5764, 팩스 : 02-3396-8779, email : song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http://www.junggu.seoul.kr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죄, 붕괴,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빈집”이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.
2. “빈집정비”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,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정비사업구역”이라 함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도시정비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·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법령 등과의 관계)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지원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빈집정비의 기본방향
2.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
3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
4.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
5.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빈집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
7.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,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⑤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법 제5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빈집정비사업의 방법)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

- 1.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·천장재·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
- 2.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·증축·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또는 집수리하는 방법
- 3.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
- 4.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기간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
- 5.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,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
- 6. 건축사회 또는 중구 건축위원회 등(이하 “전문가”라 한다)이 참여하는 사전점검을 통한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 마련 및 이행

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(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(이하 “소유자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빈집 정비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유자가 집수리를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수리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.

- 1.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,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
  - 2. 빈집의 성능개선(단열, 방수, 창호, 구조보강) 공사
  - 3.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구청장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빈집의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을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리비용 지원 비율 및 세부기준)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보조지원 하는 경우 수리비의 50%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빈집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)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), 과세, 수도·전기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·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요청·제공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,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1조(홍보)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빈집의 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유관기관 협의)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42호

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당9-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6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책임수행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(서울지역본부)
- 2.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: 서울 중구 신당9-2 지적재조사지구
- 3. 사업위치 및 면적
  - 위 치 : 신당동 432-622 일원
  - 필지수 : 25필지
  - 면 적 : 2,953㎡
- 4. 위탁 업무 :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
- 5. 기타 :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(☎02-3396-5935) 문의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651호


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조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4년 6월 26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: 인증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
- 2.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: 2024. 6. 26.
- 3.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

● 등록 공인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규 격 및 서 체	비 고
신 조	중구청장의인 FAX민원전용 (종직인)		2.4cm × 2.4cm 서울남산체EB	

● 폐기 공인

구 분	공 인 명	인 영	규 격 및 서 체	비 고
폐 기	중구청장의인 FAX민원전용 (종직인)		2.4cm × 2.4cm 한글전서체	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657호

### 공 시 송 달 공 고

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소유자에게 송달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·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6월 26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사업명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사업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2번지 일대
- 3. 사업시행자 : 더센티시티제삼차(주) 대표이사 박래영
- 4. 공고기간 : 2024.06.26. ~ 2024.07.10. (14일간)
- 5.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6층)
- 6. 공시송달 대상자

연 번	성 명	송 달 주 소	비 고
1	이선천	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5, ***-***	이사불명

- 7.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를 대상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